

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



구 미 시

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이행사항으로 이차전지 기업 및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노·사·민·정 상생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- 나.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출연금을 2026년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1) 출연기관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
- 2) 소재지 :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, 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3) 출연금액 : 300백만원
- 4) 사용처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상생협력기금 조성

나. 사업 개요

- 1) 사업명 :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
- 2) 운용주체 :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
- 3) 사업내용 :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사항인 상생협력기금 운용 및 센터운영관리를 통한 노·사·민·정 상생협력 강화
 - 관내 이차전지 관련기업 기술개발 지원
 - ESG경영 전략 수립 지원
 -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
 - 기업 역량강화 간담회 개최 지원 등

다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2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
- 3) 「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」 제7조, 제19조

3.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가. 출연안 제출 : 2025. 9월
- 나. 출연안 심사 및 의결(제290회 임시회) : 2025. 9. 10. ~ 17.
- 다.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상생협력기금 출연 : 2026. ~ 2027.
- 라.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업무추진 및 기금운용 : 2026. ~

4. 기대효과

- 가. 기금운영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업[(주)LG-HY BCM]과 구미 소재의 이차전지 관련기업 및 종사자에게 상생협력사업, ESG기반 구축사업 등 프로그램 제공하여 구미시 이차전지 소재 산업 육성에 기여
- 나. 지역 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여 이차전지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이차전지 기업지원 및 노사상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상생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제14조(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
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(광역시·군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 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

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

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, 집적(集積)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,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·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」

제7조(지원 및 촉진사업의 추진) ① 시장은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구미형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, 컨설팅, 연구사업
2. 구미형 일자리 모델의 창출·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
3.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약 및 핵심의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
4. 구미형 일자리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·지원 사업
5. 고용안정·유지·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
6.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갈등해소, 노사상생프로그램

7. 노동복지 증진 및 노·사·민·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
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(상생협력기금) ① 시장은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상생협력 기금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금은 재단법인이 관리·운용한다

1. 가치공유형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관련 협력기업의 상생협력 강화
2. ESG프로그램의 지역화
3.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

② 상생협력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로 정한다.

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·사·민·정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수반요인 발생
2. 비용추계의 전제 : 노사민정 상생협약서('21.11.10)를 바탕으로 경북도, 구미시, 민간기업에 출연금 책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년	2027년	합계
세출	300	300	6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년	2027년	합계
도 비	300	300	600
시 비	300	300	600
합 계	600	600	1,200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 성 자 :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백종훈(☎480-2605)

소 관 부 서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박 영 희
	팀 장	박 명 희
	담 당 자	백 종 훈 (480-2605)